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205
----------	-------

발의연월일 : 2025. 9. 24.

발 의 자 : 조승래 · 모경중 · 민형배
최혁진 · 김성희 · 박지혜
전용기 · 이기현 · 장철민
임오경 · 조계원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시행, 대회 육성·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국내 이스포츠 종목의 국제대회 채택 지원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국제대회 채택을 위한 예산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의 설치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장관에 대한 지속적인 자문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에 국내 이스포츠 종목의 국제대회 채택 지원을 명시하고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이스포츠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9조).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활성화, 국제 협력 및 교류”를 “활성화”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국내 이스포츠 종목의 국제대회 채택 지원 등 국제 협력 및 교류

제9조제1항 중 “둘 수 있다”를 “두어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 략) 4. 이스포츠 관련 국제대회 등 행사의 <u>활성화, 국제 협력 및</u> <u>교류</u> <u><신 설></u> 5. ~ 10. (생 략) ③ (생 략) 제9조(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① 이스포츠 진흥에 관하여 문 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에 응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 관 소속으로 이스포츠진흥자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u>둘 수 있다.</u> ② (생 략)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u>활성화</u> <u>4의2. 국내 이스포츠 종목의 국</u> <u>제대회 채택 지원 등 국제 협</u> <u>력 및 교류</u> 5. ~ 10.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① ----- ----- ----- ----- ----- ----- <u>두어</u> <u>야 한다.</u> ② (현행과 같음)